

독립기념관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우리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서류전형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한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절차 후,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 지원서로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므로 **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
(입사지원서는 최종제출 후 채용사이트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저장 가능
→ 홈페이지 입사지원>지원서 확인 및 수정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이력서 확인>PDF 저장)
-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

1. 작성 기본원칙

가. (성명)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

나. (학교)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

※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 기재 금지

☞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

예: 독립대학교 → 독O대학교(X), OOO학교(O), OOOO교(O), OOOOO(O)

독립대학교 학술지 '독립사학' → 독O사학(X), OOO학(O), OOOO(O)

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독립대 제0000호' → 독O대 제0000호(X), OO대 제0000호(O)

2. 학력사항 작성 유의사항

가. (연구직 6급)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석사학위 전공 논문 기재

나. (학예직 7급) 필수자격요건 중 학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 기재

※ 연구직 6급과 학예직 7급의 학위 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자 제외 학력사항 입력 불필요

3. 경력·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인정)

가. 분류기준

구분	금전적 보상 有	금전적 보상 無
기재방법	경력사항으로 기재	경험사항으로 기재

나. (경력) 경력사항에 기관(회사)명은 기재가능하나,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X) → OO대학교 부설연구소(O)
독립기념관(O)

다. (경험) 동아리·학술연구·프로젝트 등에 직·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HKU OO동아리(X) → 동아리(O), OO동아리(O), ~관련 동아리(O)

4.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공통) 블라인드 채용 준수

나. (예외) 논문·전공 언급(내용, 과정)은 가능하나, 인적사항·학교명 기재 금지

II

서류전형 검토 기준 및 예시

1. 서류전형 적합 여부 검토항목

구분	가	나
항목	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	응시자격 적합 여부

※ 2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처리

2. 검토항목별 처리 기준 및 예시

가. 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전 항목 0점) 처리

- (분량) 자기소개서 1개 항목 이상 미작성 또는 10% 미만 작성한 경우
- (표절) 전체 표절률 30% 이상, 또는 문항표절률 50% 이상인 경우
※ 챗 GPT 등 AI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도 표절로 간주하여 검출률 30% 이상 시 불합격 처리
- (기타) 타 기관 제출용으로 작성, 기관명 오류, 특정 문장·단어·문자·기호의 반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응시자격 적합 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요건미흡)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2개 이상 분야 지원, 또는 1개 분야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결격해당)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